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전용식 연구위원

연구

- 2016년 하반기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배상 금액과 민원을 분석하여 경미 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경미사고에서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1,2,3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임
 -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2019년 5월부터는 범퍼에서 차체 전체로 확대됨

-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충격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충격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이강현 외(2019)는 시속 3~7 km/h로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함
 - 충돌속도 시속 3~7km/h는 일상생활, 특히 초등학생 이상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탑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임

-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상해 정도가 미미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사고의 3%만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 중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 가운데 사고 피해 정도가 낮은 사고 3,903건(19.4%)을 추출하여 분석함
 - 대인배상의 변동성은 합의금과 치료비 변동성에서 초래되는데, 경미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미사고에서 나타난 대인 및 대물배상 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 훼손, 계약자들의 분쟁 확대, 보상심리 확대와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 정립이 필요함
 - 치료비와 합의금의 변동성 상해등급 8~13급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충격에 의한 동일한 상해등급이더라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상심리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치료비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미사고 진료비 심사기준이, 합의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2016년 6월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범퍼에 대해 제정되었고 2019년 5월부터는 범퍼에서 차체 전체로 확대됨
 - 경미손상 수리 기준 제정으로 경미사고에서 전·후면 범퍼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진행해야 함
 - 경미사고에서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은 1,2,3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임⁶⁾
 - 2019년 5월부터는 차량 문짝, 펜더, 후드 등 자동차 외장부품이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으로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복원수리비만 배상하게 됨

- 한편,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충격이 인체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
 - 이강현 외(2019)는 시속 3~7 km/h로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함⁷⁾
 - 이는 Kullgren 외(2011)의 실험결과와 유사한데, Kullgren 외(2011)는 차량의 속도변화가 5km/h 이하에서는 운전자의 목상해(Whiplash)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함
 - 충돌속도 시속 3~7km/h는 일상생활, 특히 초등학생 이상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탑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임
 - 경미사고에서 인체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대인배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상심리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김

- 본고에서는 2016년 하반기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배상 금액과 민원을 분석하여 경미 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적용된 2만 118건의 사고에서 지급된 대인·대물배상 자료를 분석함
 - 경미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현황을 분석함

6)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참조

7) 이강현 외(2019), “경미손상 3유형 이하 탑승자 상해위험도 연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2019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2. 경미사고 대인배상 현황



■ 2016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 중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적용된 2만 118건 가운데 상해정도가 미미한 사고 3,903건(19.4%)을 추출함

- 보험회사의 경미손상 수리 기준 적용 사고에서 상해등급 14급,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상해등급이 없는 경우,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용이 50만 원 미만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함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해등급이 부여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대인배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술적으로 차량 범퍼의 경미손상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범퍼 충격에 국한하고 있지만 표본이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가 50만 원 미만인 사고들이기 때문에 분석의 오류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사고유형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과실비율 100%인 경우가 대부분(91.8%)이기 때문에 후미추돌 사고(과실 비율 100:0)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임

〈표 1〉 경미손상 수리 기준과 상해등급 분포

(단위: 건)

| 경미손상 수리 등급 | 비고 | 구분 | 상해등급 | | |
|------------|-----------------------------|---------|-------|---------|-------|
| | | | 14급 | 상해등급 없음 | 합계 |
| 1급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장 손상 | 표본 수 | 0 | 12 | 12 |
| | | 100% 과실 | 0 | 91.7% | 91.7% |
| | | 쌍방과실 | 0 | 8.3% | 8.3% |
| 2급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 표본 수 | 78 | 2,183 | 2,261 |
| | | 100% 과실 | 85.9% | 92.0% | 91.8% |
| | | 쌍방과실 | 14.1% | 8.0% | 8.2% |
| 3급 | 굽힘, 찌힘 등 도장막과 함께 소재의 일부가 손상 | 표본 수 | 44 | 1,586 | 1,630 |
| | | 100% 과실 | 88.6% | 91.9% | 91.8% |
| | | 쌍방과실 | 11.4% | 8.1% | 8.2% |
| 합계 | | 표본 수 | 122 | 3,781 | 3,903 |
| | | 100% 과실 | 86.9% | 92.0% | 91.8% |
| | | 쌍방과실 | 13.1% | 8.0% | 8.2% |

자료: 보험개발원, A화재보험

■ 3,903건의 사고 가운데 약 97%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미손상 수리 등급 유형의 충격이 인체에 미치는 손상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상해등급이 없는 경우가 표본 추출의 기준 중 하나이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전체 표본인 2만 118건의 사고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고는 1만 8,388건(91.4%)이고 상해등급 1~7급까지 중상해 사고는 31건(0.15%), 상해등급 8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 사고는 1,699건(8.45%)임
- 차량에 대한 경미손상과 인체에 미치는 충격 간의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높아질수록(충격이 클수록) 대물 및 대인배상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물배상 금액은 상해등급이 없는 경우 50만 원 내외로 유사하지만 상해등급 14급의 경우 수리 등급 2급과 3급에서 대인 2 및 대물배상 금액이 각각 약 10만 원의 차이가 있음
 - 상해등급 14급일 때, 경미손상 수리 등급이 2급일 경우보다 3급일 경우 대물배상이 9만 2,790원 증가하는데, 이는 범퍼 소재도 손상되었기 때문임
- 상해등급 14급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배상 1은 50만 원 내외로 나타났지만 대인배상 2의 경우 수리 등급 2급과 3급에서 약 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함

〈표 2〉 경미손상 수리 기준과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만 원)

| 경미손상 수리 등급 | 구분 | 상해등급 | | |
|------------|--------|--------|---------|--------|
| | | 14급 | 상해등급 없음 | 합계 |
| 1급 | 대인배상 1 | 0.000 | 0.000 | 0.000 |
| | 대인배상 2 | 0.000 | 0.000 | 0.000 |
| | 대물배상 | 0.000 | 54.031 | 54.031 |
| 2급 | 대인배상 1 | 50.442 | 0.000 | 1.740 |
| | 대인배상 2 | 69.978 | 0.000 | 2.414 |
| | 대물배상 | 45.414 | 51.711 | 51.494 |
| 3급 | 대인배상 1 | 49.837 | 0.000 | 1.345 |
| | 대인배상 2 | 80.805 | 0.000 | 2.181 |
| | 대물배상 | 54.693 | 54.011 | 54.029 |
| 합계 | 대인배상 1 | 50.224 | 0.000 | 1.570 |
| | 대인배상 2 | 73.883 | 0.000 | 2.309 |
| | 대물배상 | 48.760 | 52.683 | 52.561 |

■ 충격의 크기가 유사한 사고임에도 대인배상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상해등급 14급 사고에서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77만 8,000원이고, 경미손상 수리 기준 3급, 상해등급 14급 사고에서 대인배상 2는 119만 2,000원의 격차를 보임
 - 대인배상 2의 95분위 수는 294만 5,000원으로 해당 집단의 5%는 294만 5,000원 이상의 배상을 받았음
- 95분위와 5분위의 차이는 340만 원 내외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보험금 하위 5%와 상위 5%의 차이가 340만 원이라는 의미임

〈표 3〉 경미손상 수리 기준과 상해등급 14급 대인배상 보험금 사분위 수

(단위: 만 원)

| 경미손상 수리 등급 | 구분 | 5분위 | 25분위 | 75분위 | 변동성(75~25분위) | 95분위 |
|------------|---------|------|------|-------|--------------|-------|
| 2급 | 대인배상 1 | 30.0 | 50.0 | 50.0 | 0.0 | 86.8 |
| | 대인배상 2 | 0.0 | 1.6 | 79.4 | 77.8 | 294.5 |
| | 대인배상 합계 | 30.0 | 51.6 | 129.4 | 77.8 | 344.3 |
| 3급 | 대인배상 1 | 45.0 | 50.0 | 50.0 | 0.0 | 50.0 |
| | 대인배상 2 | 0.0 | 2.4 | 121.6 | 119.2 | 290.0 |
| | 대인배상 합계 | 45.0 | 52.4 | 171.6 | 119.2 | 340.0 |
| 전체 표본 | 대인배상 1 | 36.3 | 50.0 | 50.0 | 0.0 | 67.2 |
| | 대인배상 2 | 0.0 | 1.6 | 100.3 | 98.7 | 290.0 |
| | 대인배상 합계 | 36.3 | 51.6 | 150.3 | 98.7 | 340.0 |

주: 변동성은 75분위 수와 25분위 수의 차이이며, 경미손상 수리 등급 1급에서는 대인배상이 없음
 자료: A화재보험

■ 대인배상의 변동성은 합의금과 치료비 변동성에서 초래되는데, 경미손상 등급이 높아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 41만 1천 원, 합의금 50만 원, 향후치료비 약 40만 2천 원으로 나타났고, 경미사고 수리 기준 3급에서 치료비의 차이는 63만 원 내외, 합의금의 차이는 51만 6천 원, 향후치료비는 약 66만 3천 원으로 충격이 커질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합의금은 휴업손해,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지만 합의금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됨
 -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의 평균 치료비는 43만 5천 원, 합의금은 76만 9천 원(향후치료비 51만 7천 원)이고, 경미손상 수리 기준 3급의 경우 평균 치료비는 44만 4천 원, 합의금은 86만 2천 원(향후치

료비 60만 원임

- 한편 동일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 상해등급에서도 일부(금액 기준 상위 5%)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177만 원을 초과하고 합의금도 195만 원을 초과함
 - 95분위 수가 177만 원이라는 것은 177만 원 이상의 금액이 5%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미손상 수리 등급 3급, 상해등급 14급의 치료비 164만 2천 원은 5%의 사고에 대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경미손상 수리 기준과 상해등급 14급의 치료비, 합의금, 향후치료비 사분위 수

(단위: 만 원)

| 경미손상 수리 등급 | 치료비 | | | 합의금 | | | 향후치료비 | | |
|------------|------|------|-------|------|------|-------|-------|------|-------|
| | 25분위 | 75분위 | 95분위 | 25분위 | 75분위 | 95분위 | 25분위 | 75분위 | 95분위 |
| 2급 | 5.8 | 46.9 | 177.3 | 40.0 | 90.0 | 170.0 | 24.2 | 64.4 | 195.0 |
| 3급 | 7.5 | 70.4 | 164.2 | 45.4 | 97.0 | 195.0 | 28.7 | 95.0 | 149.6 |
| 합계 | 6.3 | 53.7 | 164.2 | 45.0 | 95.0 | 175.7 | 25.0 | 68.0 | 138.2 |

주: 경미손상 수리 등급 1급의 경우 관측치가 없음
 자료: A화재보험

- 이상의 분석결과는 유사한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서도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사고를 유발한 충격이 클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가 증가하고 변동성도 확대됨
 - 상해등급 14급, 동일한 경미손상 수리 등급에서 치료비의 변동성이 큰 원인이 사고 개별적 특성 때문일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 보상심리 등이 원인일 수도 있음

3. 보험금 변동성과 민원



- 전술한 바와 같이 경미한 사고에서도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금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보험금 변동성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경미사고 관련 민원은 보상(배상) 민원의 15%를 차지함
 -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민원 4만 3,494건 중 보상 관련 민원은 2만 8,295건으로 전체 민원의 65.1%를 차지함
 - 2만 8,295건 중 대물보상 관련 민원이 2만 338건인데, 그 가운데 경미사고 관련 민원이 14.6%이고

대인보상 관련 민원은 7,956건이며 그 가운데 경미사고 관련 민원은 18.1%임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1만 1,799건 중 보상 관련 민원이 1만 322건인데, 대물보상 관련 민원 6,743건 중 경미사고 관련 민원은 15.8%, 대인보상 관련 민원 3,579건 중 26.2%가 경미사고 관련 민원임

■ 경미사고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보험금 과다 지급 및 적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접수된 민원 사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미사고로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안되니 지속적으로 한의원에서 7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고, 결국 1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 보험금으로 310만 원을 지급”하여 보험금 과다지급에 따른 불만을 금융감독원에 중재 요청한 사례도 있음
- “교통체증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앞차를 추돌하였는데, 앞차 운전자가 대인/대물 접수를 하여 수리비용으로 45만 원, 상해등급 14급으로 보험금 4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는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 동일한 상해등급 14급 환자들 사이에서 합의금 등 배상(보상) 금액의 변동성 확대는 형평성 훼손, 보상심리 확대를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인데, 유사한 충격에 의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금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
-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심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4. 결론



■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의 대인배상 금액은 평균 123만 원 수준인데, 공학적 실험결과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은 일상생활 충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경미사고의 91.4%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사고이지만 상해등급 14급에 대한 대인배상 1의 평균 금액은 50만 원 수준이고 대인배상 2의 평균 금액은 73만 8천 원 수준임
-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경미손상 수리 등급 3급 이하의 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가능성은 매

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강현 외 2019)

- 연구에 따르면 경미손상 수리 등급 3급 이하의 충격이 인체에 미치는 상해정도는 놀이기구 탑승 등 일상생활 충격으로 인한 상해정도와 유사함

■ 경미사고에서 나타난 대인 및 대물배상 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자동차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계약자들의 분쟁 확대,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배상금액의 높은 변동성은 형평성 훼손과 더불어 보상심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는 다른 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경미사고 관련 민원 사례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금액의 적정성을 의심하고 대인배상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자신이 초래한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역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치료비의 변동성 억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미사고 심사기준이, 합의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자료를 검토한 후 심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함
 - 향후치료비 혹은 합의금은 치료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혹은 합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억제할 수 있음
-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억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할 수 있음
 - 인체상해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미사고의 97%는 상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kiri**